

	정보공개서등록번호	20231774		
	최초등록일	2023.12.04.	최종 등록일	2024.12.27.

『메이즈메이즈』

정 보 공 개 서

「메이즈메이즈(Maze Maze)」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3. . .

「메이즈메이즈(Maze Maze)」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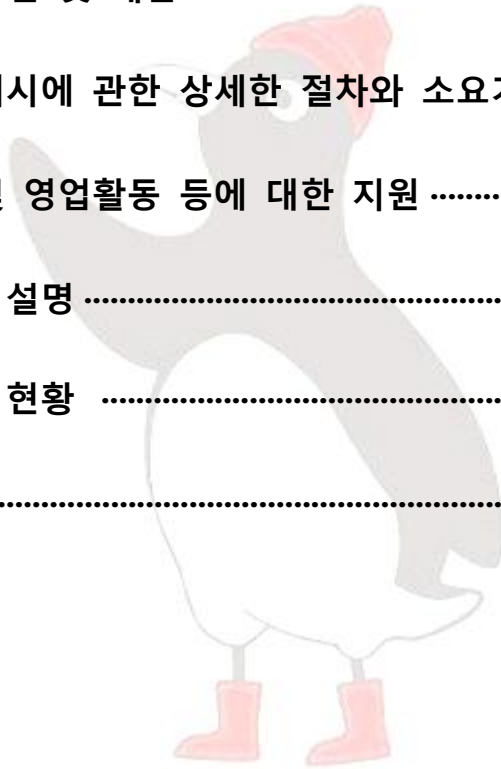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대표번호	010-2541-0682, 010-9957-5665	팩스번호	-
가맹사업담당자	손 영 경	가맹사업담당자번호	010-2541-0682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476-15, 2층		
홈페이지	-	대표이메일	mpony90@naver.com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4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7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1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2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20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36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38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40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42
X. 별첨 및 부가자료	43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 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메이즈메이즈 (Maze Maze)	메이즈메이즈	울산광역시 남구 동질로302번길 11, 1층(삼산동)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개인사업자	2022.1.17.	장다정	010-9957-5665	-
	법인등록번호	해당없음	사업자등록번호	503 - 26 - 13682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없습니다.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정보공세서 변경등록 직전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 사업을 경영한 기업)과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사실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메이즈메이즈	
상 호	메이즈메이즈 00점	
상표(서비스표)		- 출원번호 : 30-2022-0030122 - 등록번호 : 30-1184-6520000 - 지적재산권의 공동등록인: 장다정·손영경
광 고	해당없음	
그 밖의 영업표지	해당없음	

5. 가맹본부의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현황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사업개시전으로 신고금액이 없습니다.					
2022년	79,523	9,854	69,669	459,563	37,229	43,819
2023년	95,578	6,558	89,020	437,038	32,904	39,153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당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이를 대체합니다. (【별첨3】참조)

2) 당사의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당사가 『메이즈메이즈』 가맹사업 외 사업을 경영하지 않아 1).의 매출액과 같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장다정	대표이사	2022.01.17. ~ 현재	메이즈메이즈 대표	경영전반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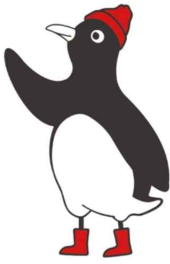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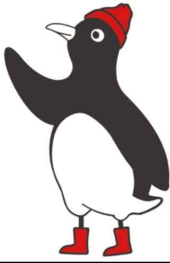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1	0	2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메이즈메이즈』 가맹사업 외의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는 사실이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출원/등록번호(일자)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서비스표 (디자인)	출원번호(일자) 3020220030122(2022.07.26.) 등록번호(일자) 3011846520000(2022.09.29.)	장다정 손영경	해당없음
	서비스표	출원번호(일자) 4020220135128(2022.07.20.) 등록번호(일자) 4021622830000(2024.03.04.)	장다정 손영경	2034.03.04.
	서비스표	출원번호(일자) 4020220135129(2022.07.20.) 등록번호(일자) 4021622840000(2024.03.04.)	장다정 손영경	2034.03.04.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 가맹본부의 『메이즈메이즈』 가맹사업 현황

1. 가맹사업 시작일

당사의 브랜드 『메이즈메이즈』의 가맹사업 시작일은 2023년 예정으로 현재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의 브랜드 『메이즈메이즈』의 직영점 오픈일은 2022년 1월 17일입니다.

2. 『메이즈메이즈』의 연혁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메이즈메이즈 (Maze Maze)	메이즈메이즈	장다정	2022.1.17.~ 현재	울산광역시 남구 동질로302번길 11, 1층(삼산동)

3. 『메이즈메이즈』 업종

영업표지	업종	
메이즈메이즈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커피	커피 및 디저트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메이즈메이즈』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1	0	1	1	0	1
서울				-	-	-	-	-	-
부산				-	-	-	-	-	-
대구				-	-	-	-	-	-
인천				-	-	-	-	-	-
광주				-	-	-	-	-	-
대전				-	-	-	-	-	-
울산				1	-	1	1	-	1
세종	사업 미개시로 해당사항 없음			-	-	-	-	-	-
경기				-	-	-	-	-	-
강원				-	-	-	-	-	-
충북				-	-	-	-	-	-
충남				-	-	-	-	-	-
전북				-	-	-	-	-	-
전남				-	-	-	-	-	-
경북				-	-	-	-	-	-
경남				-	-	-	-	-	-
제주				-	-	-	-	-	-

5. 바로 전 3년간 『메이즈메이즈』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가맹사업 미 개시로 해당 사항 없음					
2022						
2023						

6. 『메이즈메이즈』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메이즈메이즈』 가맹사업 외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가맹사업은 없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

당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3년말 가맹점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	해당없음						
서울	-	해당없음						
부산	-	해당없음						
대구	-	해당없음						
인천	-	해당없음						
광주	-	해당없음						
대전	-	해당없음						
울산	-	해당없음						
세종	-	해당없음						
경기	-	해당없음						
강원	-	해당없음						
충북	-	해당없음						
충남	-	해당없음						
전북	-	해당없음						
전남	-	해당없음						
경북	-	해당없음						
경남	-	해당없음						
제주	-	해당없음						

8. 『메이즈메이즈』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당사의 브랜드 『메이즈메이즈』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영업중인 가맹점은 없습니다.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메이즈메이즈』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지역본부를 운영하지 않으며, 당사에서 모든 가맹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메이즈메이즈』와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	-	855	-	-	
광고	소계	-	855	-	-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맹금을 예치하여야 하는 기관의 상호, 예치업무 담당 부서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주소	전화번호
농협	울산중앙금융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돌길로 265	052-256-3891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가 제공드리는 예치신청과 관련된 소정의 서식(첨부 4)을 작성하여[NH농협]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귀하에게 예치신청방법 및 예치계좌를 안내드리고 있으며, 귀하의 부주의 또는 귀책으로 예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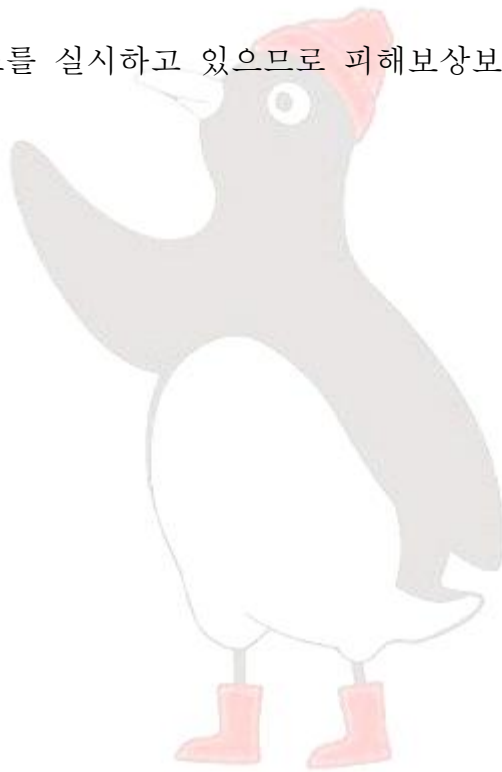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NH농협]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신한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개인>부가서비스>가맹금예치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메이즈메이즈』를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NH농협]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 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금예치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피해보상보험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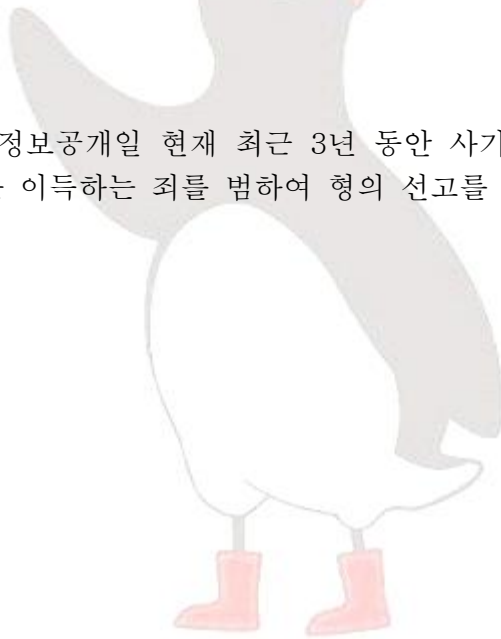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메이즈메이즈』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점포의 권리비, 점포계약시 지불하는 중개수수료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8,800				
가맹비	5,500	가맹계약 체결일 다음날까지 지급	반환되지 않음	영업 개시 후	
최초교육비	3,300			교육 개시 후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아래의 조건과 사유에 따라 반환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계약이행 보증금	3,000	가맹계약 체결일 다음날까지 지급	- 로열티, 물품대금 등의 미지급 - 계약종료 후 조치(영업표지 철거 등)의 미이행 - 계약종료 후 본사가 회수해야 하는 물품의 파손 - 기타 가맹계약상의 위법사항으로 인한 손해배상
비고	귀책사유 등으로 인해 가맹본부에 지급해야할 채무가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반환되지 않음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예치 대상 금액
합계	11,800
가맹비	5,500
최초 교육비	3,300
계약이행보증금	3,000 (부가세없음)

4) 최초 가맹금 이외에 가맹사업 개시를 위해 필요한 다른 비용의 추정치

귀하(가맹희망자)가 그 밖에 『메이즈메이즈』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기존 가맹점 양수자일 경우 아래의 품목 중 당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품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구입하여야 합니다. 각 품목의 세부 내역은 [7. 가맹점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품 목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인테리어	설계비	(협력업체)	6,000	300	가맹계약시 개별협의	소요비용 제외 후 반환	66㎡ 기준
	시공비		36,000	1,800			
간판		(협력업체)	5,000	250			점포 크기와 관계없음
설비기기		(협력업체) 등	37,834	1,892			설비기기 공급업체 상세내용은 [별첨2] 문서 참고
집기		가맹본부	1,730	87			초도 집기 및 소모품비
초도물품		가맹본부	4,380	219			
합 계			90,944	4,548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가) 위 표에 기재된 비용 중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인테리어 공사 관련 당사의 설계 및 감리대가로 3.3㎡를 기준으로 550천원(부가세 포함)을 인테리어 공사 완료 후 3일 이후에 당사에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 나) 위 표의 면적 3.3㎡당 금액은 기준면적을 3.3㎡로 나눈 금액으로, 기준면적 보다 크거나 작을 경우에도 면적 3.3㎡당 금액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습니다.
- 다)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라) 상기 비용은 설비의 품질, 선택사항에 대한 추가 및 점포 건물에 따른 냉난방기, 철거, 가스설비, 전기승압, 통신설비, 소방시설공사, 화장실공사, 외부 상하수도공사, 어닝, 외장공사,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소요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마) 자세한 비용은 계약체결 시 매장실측 후 별도로 제공안내하고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입지선정의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1) 가맹희망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점포의 입지를 선정합니다. 2) 가맹희망자의 입지선정에 당사는 해당 지역의 행정구역상의 구분, 시장의 특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점포의 실사를 통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결정권은 가맹희망자에게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특별한 기준 없음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20세 이상일 것
종업원		만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귀하가 『메이즈메이즈』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8) 금전지급의 방법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귀하(가맹희망자)는 가맹금을 분납할 수 없으며,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가맹계약 체결 및 당사 금전 지급 후 해약시 위약금

당사에 금전을 지급하거나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둘 중 빠른 시점) 귀하의 귀책사유 또는 귀하의 일방적인 변심에 의하여 가맹점 개점 전 해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가 당사에 지급한 금액 중 반환되어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의 위약별 규정에 따라 상계처리 후 반환됩니다.

계약 요청일자		위약벌
계약 체결 또는 금전지급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	정보공개서 상의 예치대상금액의 20%
	24시간 이후 10일 이내	정보공개서 상의 예치대상금액의 50%
	10일 이후 가맹점 오픈 이전	정보공개서 상의 예치대상금액의 100%
가맹계약 체결 이후 인테리어, 설비공사 등의 진행시		실제 소요된 공사비용의 전액
가맹계약 체결 이후 교육의 시행		최초 교육비 전액

또한 귀하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 체결 또는 금전지급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점포가 개업되지 않는 경우, 당사는 정보공개서 상의 예치대상금액 및 인테리어, 설비 등의 공사비용을 그 정도에 따라, 당사에게 위약벌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营业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및 산정기준	지급기한	반환여부 및 반환조건
로열티	가맹본부	월 330	매월 1일	선불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반환되지 않음
광고·판촉 분담금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일부 부담될 수 있으며, 상세한 내역은 [V.9.광고 및 판촉의 조건과 비용분담 기준] 참조	광고비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판촉 및 광고 활동 실시 후 반환되지 않음
판촉분담금		교육실시기간, 항목에 따라 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상세한 내역은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참조	개별 협의	실비로 반환 안됨
POS 사용료	POS 업체	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점포환경 개선비용	[Ⅷ.1.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참고			
지연이자	가맹본부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15%. 금전지급의무 또는 본 계약의 위반으로 부담하는 금전지급의무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개별 협의	반환되지 않음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별도)

구분(기준: 2023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해당사항 없음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3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위생, 재고관리 등을 포함한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점포를 점검하고 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장부, POS, ERP시스템, 회계장부(이하 ‘회계자료’라 한다)를 성실히 작성·유지하여야 하며,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을 파악할 수 있도록 확인 가능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품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자료 등 당사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 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는 당사가 귀하의 점포의 전산 매출정보를 수집하는 것과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 당사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양수한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자와 가맹계약체결 의사가 없을 경우 기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가맹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 이행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가 사용을 허락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이를 가맹점사업자가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가맹점사업자는 변경된 영업표지를 사용하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 이행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가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 당사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한 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 이행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별도의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가맹점사업자는 아래의 양수가맹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등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 고
총 계	8,600				
양수가맹비	3,300	가맹계약 체결일 다음날까지 지급	반환되지 않음	영업개시 후	
양수교육비	3,300			교육시작 후	

양수보증금	2,000 (부가세없음)		가맹계약 해지 시 반환	귀책사유 발생시 상계 후 반환	[Ⅳ.1.2]보증금 항목 준용
-------	------------------	--	--------------	---------------------	---------------------

4) 그 밖의 부담 비용

귀하가 그 밖에 부담하여야 하는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5)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와 『메이즈메이즈』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사로부터 부여받았던 가맹점운영권이 만료되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가) 당사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은 『메이즈메이즈』 가맹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 나) 사용허가를 얻어 사용하던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
- 다) “협력업체”로부터 지원받은 기기 등을 임의 철거를 하지 못하며 지원받은 품목을 반환해야 합니다.
- 라) 이 경우 계약 종결을 이유로 『메이즈메이즈』 이 이미 제공한 공급품을 『메이즈메이즈』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상호 협의하여 반환품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마)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운영에 관한 모든 관계서류(계약서, 매뉴얼 등)를 반환하거나 즉시 폐기하여야 합니다.
- 바)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유효기간 동안이나 종결 후에도 경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이나 고객을 넘겨주는 행위 또는 『메이즈메이즈』에 대한 신용을 해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메이즈메이즈』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순번	품목(단위)	공급가격		구분
		상한	하한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메이즈메이즈』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직전 사업연도에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수취한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메이즈메이즈』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당사가 직전 사업연도에 수취한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 2) 당사가 『메이즈메이즈』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직전 사업연도에 수취한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는 『메이즈메이즈』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서비스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당사로부터 승인된 상품이나 서비스만을 고객에게 제공·판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별첨1. 메뉴판 참고>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 1회 위반: 구두 경고 •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 3회 위반: 상품공급의 중단 • 4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가맹사업법의 해지 절차 준용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지정한 메뉴 이외에도 가맹사업의 개선, 고객니즈의 변화, 경쟁업체의 출현, 시장변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으로 기존 메뉴의 변경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하며, 가맹본부가 지정한 메뉴를 판매해야 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 또는 알선한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을 고객판매 용도 외 타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가맹본부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시장상황이나 소비자의 동향 또는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소비자 판매가를 정하여 권장할 수 있으며, 그 가격은 「별첨 1」 메뉴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권장 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당사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①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커피 및 디저트 전문점	메이즈메이즈	해당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 가맹점 중앙을 기준으로 도보이동시 소요거리 20분 이내 단, 특수상권(백화점, 쇼핑몰, 마트, 시장, 역사, 지하상가, 공항,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병원, 관공서, 호텔, 리조트 등)은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귀하의 영업지역에서 제외됨. 특수상권은 계약체결 당시 존재하는 특수상권을 비롯하여 계약기간 중에 신설되는 특수상권도 귀하의 영업지역에서 제외됨. 만일 귀하의 매장이 특수상권에 위치하는 경우 귀하의 영업지역은 해당 특수상권 내로 한정함. 또한 귀하의 매장이 특수상권인지에 위치하는지의 여부는 별도 특약으로 정할 수 있음.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 나)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다)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메이즈메이즈』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	100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메이즈메이즈』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입니다. 다만, 갱신시에는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중 3. 계약종료 후의 부담’에 기재된 갱신비를 지급해야 하며, 이 경우 1년 씩 계약기간이 연장됩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 (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 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7조 2항 각호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 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 을 지키지 않은 경우	
『메이즈메이즈』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 니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가) 당사는 아래와 같은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시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의 시
정요구를 하며 이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시정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가 점포의 규모·대표자 등의 가맹점의 표시에 해당하는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3조2항~3항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허용한 영업표지의 사용범위 외에 서면 동의 없이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4조3항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보유한 영업표지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4조4항
가맹점사업자가 공급품대금 및 기타 대금의 약정한 납입기일을 경과하는 경우	15조
가맹점사업자가 개점 이후 교육에 참석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거부하는 경우	16조
가맹점사업자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17조1항~2항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제3자 명의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8조
가맹점사업자가 관리감독 기준에 의한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0조1항
가맹점사업자가 메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거래처권장품목을 사용하지 않거나 지정거래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거래처강제품목을 사용하지 않는 행위 등으로 인해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하는 경우	21조1항~4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사전협의 없이 가격을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21조5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에 대하여 가맹점 판매 용도 이외로 사용할 경우	22조9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승인받지 않고서 요구 품목을 자점매입하거나 품질검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	23조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복장 규정을 위반하거나 영업시간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26조
가맹점사업자가 노후화 또는 위생·안전의 결함으로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시설 등의 교체·설치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27조 2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가맹점 설비를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27조6항
가맹점사업자가 회계자료 통지 등의 통지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28조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되는 광고의 광고비 분담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29조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되는 판촉활동에 정당한 이유 없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29조2항~5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판촉물 등을 제작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29조7항
가맹점사업자가 사전 승인 없이 양도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34조1항
기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내용 및 별도 약정한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25조 21호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3개월 이상 개점이 지연되거나 최초 개설 비용의 지급을 지키지 않는 경우	30조 1항2호

25조
각호 및
30조 1항
1호

나) 당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30조 4항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①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②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 처분 ③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각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맹점사업자가 약정해지 사유 위반으로 당사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가맹계약해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된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다) 당사 및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30 조 3 항 각호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부도 처리되거나 강제집행을 당하는 경우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라) 당사 및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여한 영업지역에 부당하게 직영점 또는 가맹점을 설치하는 경우	30 조 2 항 각호
당사가 가맹점운영에 필요한 공급품에 대하여 부당하게 공급을 거절하는 경우	

당사가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을 경우	
----------------------------------	--

마)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가 위에 해당하는 해지사유 이외에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2개월 전에 당사에게 계약 해지의 내용을 통보하고 당사가 제시하는 합의 해지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관련법의 제정 및 개정 또는 양 당사자 사이의 서면 합의, 경영방침의 변경이 있을 시에는 귀하에게 사전 통보한 후에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갱신 시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180일에서 90일 사이에 계약의 변경 조건을 통지하고 재계약 여부를 묻게 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커피전문점 또는 음식점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고,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을 약속할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 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가맹사업팀

가) 양수인은 잔여계약 기간에 대하여 가맹점운영권이 인정되며, 양수에 따른 교육이수 및 정보공개서 상의 양수인의 부담비용(정보공개서 상의 양수가맹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등 부담비용)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양수인이 원할 경우 신규가입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직계 존비속의 영업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본부에 통지하고 승인을 얻은 후 영업개시 전까지 교육비를 부담하고 교육을 이수하고 본 가맹점 영업을 계

속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 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운영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대리행사	본부승인시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대리행사 여부 통지 → 필수 교육 수수료 (필요시)	(필요시) 교육수수료 및 교육비 지급
업무위탁	본부승인시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위탁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업무 위탁 여부 통지 → 필수 교육 수수료 (필요시)	(필요시) 교육수수료 및 교육비 지급
상속	상속 후 1개월 이내 통지 시	모든 권리의무	가맹본부에 서면통지	교육수수료 및 교육비 지급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및 계약 만료 후 2 년동안 자신 및 제 3 자로 하여금 당사의 허락 없이 『메이즈메이즈』와 동종업종(타사 가맹점, 독립점포 및 가맹본부 경영을 포함한다)을 경영하여서는 안됩니다.

계약종료 후 당사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 3 자의 명의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메이즈메이즈』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가맹점사업자에게 금지되는 경업금지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일반인에게 커피 및 음료를 제공하는 빵 과자류 제품과 음료를 함께 제공하는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경업 시작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메이즈메이즈』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2:00 ~ 21:00	365일 연중 무휴 영업	구체적인 내용은 가맹계약서 제26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영업시간은 가맹계약 체결 전, 당사와 협의가 가능하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와 협의한 영업시간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 근무 여부
가맹점사업자는 효율적인 가맹점의 운영과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홀 및 주방에 상시인원 2인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가맹점사업자가 매장에 근무하도록 권장하나, 필수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비고
매장 청결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가맹본부의 관리자·가맹담당자의 방문에 의한 방법
제품의 표준화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 → 주문 → 친절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POS사용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전산장비 or 방문확인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광고(브랜드광고, 상품광고 등을 포함한다)를 총괄하며 당사의 경영적 판단과 결정에 의하여 광고에 사용되는 소재와 매체, 횟수, 시행일자 및 기간 등의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공동 광고	상품, 브랜드,가맹점모집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의 50% (전체 가맹점이 균등하게 부담)	광고 계획 공고 및 통보→가맹점의 광고 참여 여부 결정→가맹점의 부담액 통지(광고1개월 전)→통지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 납입	
	순수 가맹점모집광고	전액부담	-	-	
공동 판촉행사	할인행사	할인금액 (소비자가) 40%	할인금액 (소비자가) 60%	행사 계획 공고→가맹점 부담액 제시→가맹점의 광고 참여 여부 결정 →행사시행 →종료 후 가맹점별 최종 분담금 납입	
	홍보물 제작	홍보물 총 제작비용의 50%	홍보물 총 제작비용의 50%		
	증정 행사	증정상품 출하가의 40%	증정상품 출하가의 60%		
	개별 행사	기획, 제작 비용 이외는 협의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의 영업지역 내에서 당사와 별개로 광고·판촉활동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판촉활동 등을 위한 팜플렛, 카달로그, 쿠폰 등의 내용은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당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 및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가 제공한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이나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어떠한 목적으로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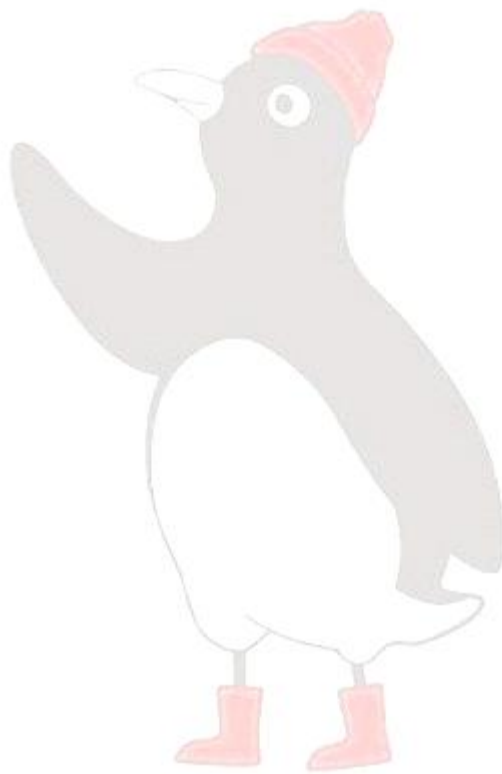
가맹점사업자는 그 직원에 의한 영업비밀의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관리감독상의 의무는 본 계약의 성립시점부터 종료한 후 3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지속됩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당사와 귀하는 가맹계약의 양 당사자로서, 당사는 귀하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위약벌 이외에 당사 또는 귀하에게 추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사가 귀하에게 제공하는 가맹계약서의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 및 위약벌 사유	관련 계약조문
귀하는 계약 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제 17 조(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또는 계약 기간 내 제 18 조(경업금지 의무) 제 1 항을 위반할 경우 귀하는 당사에 위약벌로 금일천만원(₩10,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맹계약서 제32조 제1항
귀하가 거래처강제품목에 대하여 당사 또는 협력업체를 통해 구입하여 사용하지 않고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별도의 거래처를 통하여 거래처강제품목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귀하는 당사에 위약벌로 금일백만원(₩1,000,000)을 지급하여야 하며, 시정 전까지 적발 익일부터 위약금으로 하루 당 금일십만원(₩100,000)씩 당사에 지불하여야 한다.	제32조 제2항
귀하가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지정사양(제조원/판매원 등)의 거래처권장품목 이외에 품목을 구입/사용하거나 지정된 메뉴 이외의 메뉴를 판매할 경우 【냉장고 보관 시에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함】 적발 즉시 위약벌로 금일백만원(₩2,000,000)을 지급하여야 하며, 시정 전까지 적발 익일부터 위약금으로 하루 당 금일십만원(₩200,000)씩 당사에 지불하여야 한다.	제32조 제3항
귀하가 제 31 조 제 2 항 및 제 5 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가맹점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중단·폐업 처리하거나 당사가 사용을 허락한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운영 또는 양도한 경우 귀하는 당사에 위약벌로 금오백만원(₩5,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2조 제4항
귀하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당사가 계약 기간 내에 사용을 허락한 영업표지 등을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에 계속하여 사용할 경우 귀하는 계약 종료 익일부터 위약벌로 1 일 금삼십만원(₩300,000)씩 당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33조 제5항
귀하가 제 7 조에 기재된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고, 계약 기간 내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귀하의 귀책사유로 인해 가맹계약을 존속할 수 없는 해지 사유(즉시해지사유 포함)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당사에 위약벌로서 [잔존개월*직전 개월 당사에 지급한 로열티]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2조 제6항
당사 또는 당사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귀하는 당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2조 제7항

귀하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당사 또는 당사의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2조 제8항
제 1 항 내지 제 4 항에 의한 위약벌 이외에 당사 또는 귀하에게 추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2조 제9항
본 계약에 규정된 금전지급의무 또는 본 계약의 위반으로 부담하는 금전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을 경과하면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이율(15%)의 지연이자를 가산한다.	제36조 제1항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약 40 일 정도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 및 각 단계별 소요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소요기간	비고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010-2541-0682, 010-9957-5665) 또는 방문 - 인터넷 홈페이지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이전 부담 참조
1 차 상담	- 전화상담 / 본사방문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인근 10 개 가맹점 현황문서	- 정보공개 사항 검토 - 인근 가맹점 확인	14 일 이상	
가맹계약서 제공	- 가맹계약서 검토	14 일 이상	
가맹 계약 및 계약금 지급(예치포함)	- 가맹 계약 체결 - 가맹계약서 1 부 교부 보관	-	
점포 계약	- 점포입지 선정 - 점포개발 착수 - 상권분석	필요시 실시	
점포실측/설계	- 매장 내.외부 중심선 기준 실측/ 평수 계산(소수점 첫째자리)	-	
도면 작성	- 인테리어 / 별도 / 추가공사 도면협의	-	
인테리어 공사	- 인테리어 공사 실시	-	
기자재 및 소품설치	- 기자재 및 소품 설치	-	
교육	- 교육 - 아르바이트교육, 점주교육	5 일	
오픈	- 오픈 리허설(담당자 판단 후 오픈결정) - 오프닝 행사(담당자 판단)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 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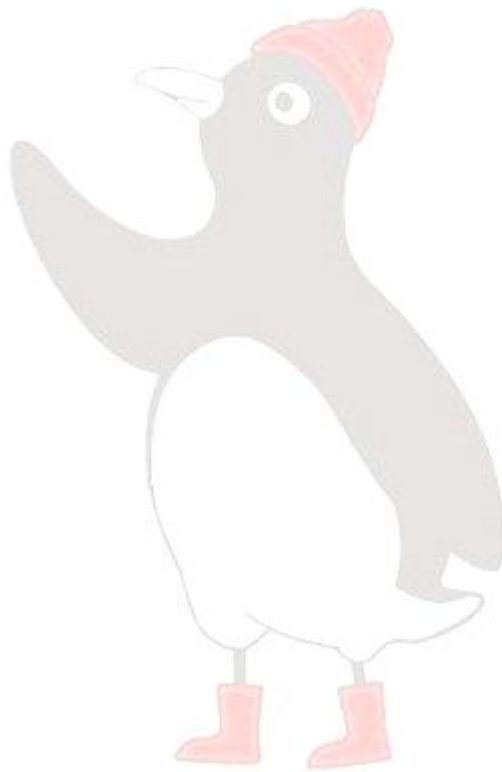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사의 점포환경 개선 요구가 있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 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사유	- 점포의 시설, 장비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 안전의 결함으로 인해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 간판교체 비용 -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2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지급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 합의시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의 판촉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 지도를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①	절 차 ^②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계약이행, 표준화, 가맹점 별 시장조사·판촉, 가맹점의 경영상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석 및 지도	가맹본부가 개별 가맹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필요 시 가맹점 방문 → 가맹점 현황 분석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후 그 결과 및 개 선방안 서면 제시	가맹본부 부담	필요시
가맹점사업자		가맹점사업자 특별 경영지 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 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 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 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 게 제시 → 가맹본부는 경 영지도후 그 결과 및 개선 방안 서면 제시	가맹점사업자 부담	요청시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메이즈메이즈』 가맹점사업자를 위한 별도의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1) 개점 전 교육 프로그램

당사는 『메이즈메이즈』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점 전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운영, 상품 교육	개별 및 집단강의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필수 교육
	실 매장에서의 서비스 방법	현장실습교육		

* 상기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개점 전 교육훈련 종료 시 평가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추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귀하에게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2) 개점 후 교육 프로그램

당사는 효율적인 『메이즈메이즈』가맹점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점 이후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①	기한	비고 ^②
수시교육	가맹점 통지사항 및 의견수렴	개별 및 집단강의	개별협의	필수 교육
특별교육	가맹점사업자의 요청 내용	개별교육		선택교육
재교육	가맹점관리 및 운영			필수교육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메이즈메이즈』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으며, 교육·훈련에 미참여 및 이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오픈의 연기 또는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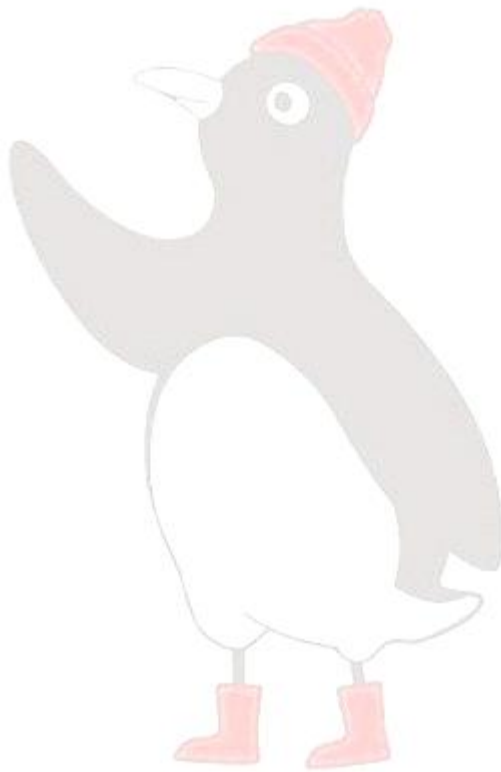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개점 전 교육	72시간	3,300	최초 계약시 이수
수시 교육	개별 협의	기본 교육 무료, 특별 교육은 실비청구	필요시 사전협의 후 실시
특별 교육		개별 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산정	
재교육		일정 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되는 교육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는 가맹점사업자(필수) 및 기타인원(협의)입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당사와 사전협의 한 경우에는 타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개점이 지연될 수 있으며 개점 이후 전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에 교육 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가맹점운영권 제한 사유 및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울산	메이즈메이즈	울산광역시 남구 돈길로302번길 11, 1층 (삼산동)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1년 11 개월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437,038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직영점의 당해연도 영업기간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의 부가 가치세 신고금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별첨 1】 메뉴판 (2023.3. 기준)

MAZE MA!ZE

Coffee	Americano 아메리카노	4,8		Decaf 디카페인 0,5
	Espresso Conpanna 콘파냐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크림+초코칩)	5,0	+	Hazelnut 헤이즐넛시럽 0,5
Signature(!) 동물성크림100%	Earl grey Spanner 홍차슈페너 (수제홍차시럽)	6,0		Decaf 디카페인 0,5
	Vanilla bean Spanner 바닐라빈슈페너	6,0	+	Oat milk 오트밀크 1,0
	Einspanner 아인슈페너 (water base)	5,9		
Latte (coffee)	Cafe latte 카페라떼	5,3		
	Vanilla bean latte 바닐라빈라떼	5,8	+	Decaf 디카페인 0,5
	Earl grey latte 홍차라떼 (수제홍차시럽)	5,8		Oat milk 오트밀크 1,0
	Dolce Latte 돌체라떼	5,8		
Latte (non-coffee)	Milk Tea 밀크티 (수제홍차시럽)	5,8		
	Strawberry Latte 딸기라떼 (only ice)	5,8		
	Melon milk Latte 메론밀크라떼 (only ice)	6,0	+	Oat milk 오트밀크 1,0
	Strawberry chocolate Latte 딸기초코라떼 (only ice)	6,3		
	Double chocolate Latte 더블초코라떼	5,8		
	Matcha Latte 제주말차라떼	5,8		



【별첨 1】 메뉴판 (2023.3. 기준)

MAZE MA!ZE

Beverage (only ice)	Lemonade	5,5
	레몬에이드	
	Peach Earl grey iced tea	6,0
	피치얼그레이 아이스티	
	Real Melon soda	6,0
	리얼메론소다	
	Lime mint ade	5,5
	라임민트에이드	

Tea (premium)	Apple Yuza tea	6,0
	제주 애플 유자차	
	Earl grey Morning	5,3
	얼그레이모닝 (Note:베르가못향+바닐라향+밀키)	
	Green Peppermint	5,3
	킵그린 페퍼민트 (Note:레몬그라스+그린마테+페퍼민트)	
	Spirit of Africa	5,3
	스피릿 오브 아프리카 (Note:자몽향+파파야+홍화잎) -디카페인	

Alcohol	Beer	6,5
	버드와이저 / 호가든 / 스텔라	
	Lime mint Mojito	9,0
	라임민트모히토	

Brunch

Avocado Egg Open Sandwich	9,8
아보카도에그 오픈샌드위치	
Jambon Rucola Open Sandwich	10,8
잠봉루콜라 오픈샌드위치	
Truffle Mushroom Cup Soup	6,5
트러플양송이 컵스프	
Cassava Chip Snack	7,0
카사바칩 스낵	

Dessert

Custard Pudding	Basque Cheesecake
커스타드 푸딩 (signature)	바스크치즈케이크
6,0	6,5
Double Chococake	Banana Cake
더블초코케이크	바나나푸딩 케이크
6,9	6,5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